의안번호	2202466
의 뢰 인	박성훈 의원
회 답 일	2024. 7. 24.
추계번호	24F2297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&D 적용기한 3년 연장,
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등

【비용추계서】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Ⅰ. 비용추계 결과

❑ 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&D 세액공제와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에 따라 법인세 등은 2026년 2조 5,362억원, 2028년 2조 6,907억원 등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총 7조 8,393억원(연평균 2조 6,131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○ 개정안은 '국가전략기술 연구시설 이용료에 대한 세액공제' 및 '이스포츠대회 운영비에 대한 세액공제'를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, 관련 시설 이용료 및 이스포츠대회 운영비 등에 대한 자료가 부재하여 세수효과를 추계할 수 없음

○ 이를 고려할 경우 전체적인 재정수입 감소는 제시된 금액과 다를 수 있음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법인세 등, 2026~2028년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누적	연평균
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&D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(안 제10조 제1항)	−20,542	−21,158	−21,793	−63,492	−21,164
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(안 제24조 제1항 제2호) [1]	−4,821	−4,965	−5,115	−14,901	−4,967
계	−25,362	−26,123	−26,907	−78,393	−26,131

주: 1) 해당 항목의 세수효과는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(감면액의 20%)를 고려한 값임

Ⅱ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0조 (연구·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)	○ 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&D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– (현행) 2024년 12월 31일 – (개정안) 2027년 12월 31일	
2	안 제24조 제1항 제2호 (통합투자세액공제)	○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– (현행) 2024년 12월 31일 – (개정안) 2027년 12월 31일	

3	안 제25조의8 신설 (국가전략기술 연구시설 이용료에 대한 세액공제)	○ 국가전략기술을 위한 연구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의 일정률을 세액공제 – 세액공제율: 대·중견기업 15%, 중소기업 25% – 적용기한: 2027년 12월 31일	
4	제104조의27 신설 (이스포츠대회를 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)	○ 「이스포츠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선정된 종목의 대회를 창설하여 운영하는 경우, 운영비용의 일정률을 세액공제 – 세액공제율: 20% – 적용기한: 2029년 12월 31일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
1	안 제10조(연구·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)	○	
2	안 제24조 제1항 제2호(통합투자 세액공제)	○	
3	안 제25조의8 신설 (국가전략기술 연구시설 이용료에 대한 세액공제)	×	○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호 –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4	제104조의27 신설 (이스포츠대회를 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)	×	○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호 –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❑ 현행 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&D·시설투자 세액공제의 적용기한(2024년 말)을 감안 시, 세수효과는 징수기준에 따라 2026년부터 발생

○ 2025~2027년 R&D ·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법인세 신고가 이루어지는 2026~2028년 발생

❑ 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&D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의 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통해 추계

○ 실적 자료는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기술별 2022년 R&D 세액공제 실적을 활용하되, 국가전략기술 R&D 실적은 기획재정부 답변자료[1] 상 2023년 잠정 실적을 활용

○ 정부가 「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」[2] 에서 전망한 '지식재산생산물투자 증감률' 에 따라 향후 공제액 실적이 변동할 것으로 가정

- 정부의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증감률 전망치는 2025년까지 존재하며, 이후 기간은 2025년의 증감률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함

○ 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&D에 대한 특례가 종료될 경우, 해당 R&D에 대해서는 일반 R&D에 대한 공제율이 적용된다는 가정 하에, 공제율 차이를 반영하여 세수효과 산출

❑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의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통해 추계

○ 기획재정부 답변자료[1] 상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2023년 잠정실적을 바탕으로, 향후 세액공제액이 산업은행의 「설비투자계획조사(2023)」 상 기업규모별 설비투자 증감률에 따라 변동할 것으로 가정

- 「설비투자계획조사」 상 설비투자 증감률 전망치는 2024년까지만 존재하며, 이후 기간은 2024년의 증감률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함

○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가 종료될 경우, 해당 시설투자에 대하여 신성장·원천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는 가정 하에, 신성장·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 사이의 공제율 차이를 비례적으로 반영하여 세수효과 산출

○ 시설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경우 감면액의 20%를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하므로, 추계 시 이를 고려함

❑ 향후 기업에 이익이 충분히 발생하여 확대되는 세액공제를 모두 감면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며, 최저한세 적용 등은 고려하지 않음

---

1) 기획재정부, '국무위원후보자(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)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', 2023. 12.
2)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, 「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」, 2024.7.3.

❑ 동 추계는 세액공제율 변화에 따른 기업의 행태변화를 고려하지 않음

○ 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R&D·시설투자 세액공제 연장에 따라 기업의 R&D 및 시설투자가 달라질 가능성이 존재하지만, 추계 시 이를 고려하지 않음

❑ 이외에도 개정안은 '국가전략기술 연구시설 이용료에 대한 세액공제'를 신설하고, '이스포츠 운영기업에 대한 과세특례'를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,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동 추계에서 제외함

○ 국가전략기술 연구시설 이용료 및 이스포츠 대회 운영비 등에 대한 현황 자료가 부재하여, 합리적인 세수효과 추계가 어려움

3. 상세 추계내역

가. 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&D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

(1) 제도 개요 및 실적

❑ (제도 개요)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기술별로 다음과 같음

○ 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&D에 대해서는 일반 R&D(당기분) 대비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

- 신성장·원천기술 R&D: 대기업 20%, 중견기업 20%, 중소기업 30%
- 국가전략기술 R&D: 대기업 30%, 중견기업 30%, 중소기업 40%

* '매출액 대비 R&D 비중 × 3 (한도 10%)'를 한도로 추가공제율 적용

[표 2] 일반, 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&D 세액공제율

(단위: %)

		대기업	중견기업	중소기업
일반	증가분	25	40	50
	당기분	최대 2[2]	8	25
신성장·원천기술		20~30	20~30[1]	30~40
국가전략기술		30~40	30~40	40~50

주: 1) 코스닥에 상장한 중견기업의 경우, 공제율 25~40% 적용함
2) 일반기업의 당기분 공제율은 '수입금액 대비 일반 연구·인력개발비 비중 × 1/2' 로 계산함

❑ (공제실적) 2022년 R&D 세액공제 실적은 총 3조 6,173억원 수준

[표 3] 기술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실적(법인세): 2022년

(단위: 억원)

	중소기업	중견기업	대기업	계
일반 R&D	14,512	2,535	5,811	22,858
신성장·원천기술 R&D	292	324	8,176	8,791
국가전략기술 R&D	18	0.2	4,506	4,524
계	14,821	2,859	18,494	36,173

자료: 국세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(2) 추계방법

❑ (향후 공제액 전망치) 2022년 및 2023년 잠정실적을 바탕으로 「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」 상 '지식재산생산물투자 증감률' 전망에 따라 향후 공제액이 변동할 것으로 가정하여 전망

○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증감률 전망 : ('24년) 2.5%, ('25년) 3.0%

※ 2026년 이후는 2025년 증감률이 동일하게 유지될 것으로 가정

[표 4] 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&D 세액공제액 전망

(단위: 억원)

<신성장·원천기술>	2025	2026	2027	2028
중소기업	319	329	339	349
중견기업	354	365	376	387
대기업	8,949	9,217	9,494	9,779
계	9,622	9,911	10,208	10,515

<국가전략기술>	2025	2026	2027	2028
중소기업	33	34	35	36
중견기업	9	10	10	10
대기업	12,433	12,806	13,190	13,586
계	12,476	12,850	13,236	13,633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❑ (세수효과) 앞서 전망한 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&D 세액공제액을 기준으로 일반 R&D 공제율과의 차이를 반영하여 세수효과 산출

○ 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&D에 대한 공제율 특례가 종료될 경우, 해당 R&D는 일반 R&D 공제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가정

[표 5] 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&D 세액공제 3년 연장에 따른 공제액 변화

(단위: 억원)

		2026	2027	2028
신성장·원천기술 R&D	일반 R&D 공제율 기준(A)	1,342	1,382	1,423
	신성장·원천 공제율 기준(B)	9,911	10,208	10,515
	차이(B-A)	8,569	8,826	9,091
국가전략기술 R&D	일반 R&D 공제율 기준(A)	878	904	931
	국가전략 공제율 기준(B)	12,850	13,236	13,633
	차이(B-A)	11,972	12,331	12,701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(3) 추계결과

❑ 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&D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에 따라 법인세는 2026년 2조 542억원, 2028년 2조 1,793억원 등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총 6조 3,492억원(연평균 2조 1,64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6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법인세, 2026~2028년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누적	연평균
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R&D 세액공제 3년 연장 (안 제10조 제1항)	-20,542	-21,158	-21,793	-63,492	-21,164

나.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

(1) 제도 개요 및 조세지출 실적

❑ (제도 개요)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신성장·원천기술 시설투자에 비해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

○ 현행 국가전략기술은 '반도체, 배터리, 백신, 디스플레이, 수소, 미래형이동수단, 바이오의약품' 등 7개 분야의 62개 기술 등

○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 기본 15~25%의 공제율을 적용하며, 직전 3년 평균을 초과하는 투자분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(4%)를 적용함

- (기본공제율) 신성장·원천기술 사업화시설 투자 대비 12~13%p 우대
- (추가공제율) 신성장·원천기술 사업화시설 투자 대비 1%p 우대

[표 7] 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차이

(단위: %)

	당기분			증가분
	대기업	중견기업	중소기업	
신성장·원천기술	3	6	12	3
국가전략기술	15	15	25	4

❑ (공제실적) 2023년 잠정실적 기준,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액은 7,500억원 수준

○ 기업규모별로 대기업 7,483억원, 중견기업 9억원, 중소기업 8억원 수준

[표 8]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관련 세액공제 실적: 2023년(잠정치)

(단위: 억원)

	중소기업	중견기업	대기업	계
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	8	9	7,483	7,500

자료: 기획재정부가 인사청문회 당시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활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(2) 추계방법

❑ (향후 공제액 전망치) 2023년 잠정실적을 바탕으로 「설비투자계획조사」 설비투자 증감률에 따라 공제액이 변동할 것으로 가정하여 향후 공제액을 전망

○ 「설비투자계획조사(2023)」 상 2023~2024년 기업규모별 설비투자 증감률

- 2023년 설비투자 증감률(잠정): 대 -5.3%, 중견기업 9.8%, 중소기업 5.8%
- 2024년 설비투자 증감률(전망): 대 3.0%, 중견기업 4.3%, 중소기업 6.5%

※ 2025년 이후는 2024년과 동일한 투자 증감률을 적용

[표 9]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액 전망

(단위: 억원)

	2024	2025	2026	2027	2028
중소기업	8	9	10	10	11
중견기업	10	10	11	11	12
대기업	7,086	7,299	7,518	7,744	7,976
계	7,105	7,318	7,538	7,765	7,998

자료: 한국산업은행, 「설비투자계획조사(2023)」을 활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❑ (세수효과) 앞서 전망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액을 기준으로 신성장·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공제율 차이를 반영하여 세수효과 산출

○ 현행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가 종료될 경우 해당 투자는 신성장·원천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공제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가정하여, 현행 및 개정안의 공제율 차이를 비례적으로 반영하여 세수효과 추정

- 2025년(징수기준 2026년) 이후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(%):
  (현행) 신성장·원천기술에 대한 공제율 적용: 대기업 3, 중견기업 6, 중소기업 12
  (개정안)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공제율 적용: 대기업 15, 중견기업 15, 중소기업 25
- 세수효과 추정 시 농어촌특별세 과세(감면액의 20%)을 반영하여 추정

[표 10]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3년 연장에 따른 공제액 변화

(단위: 억원)

		2026	2027	2028
투자세액 공제액	현행(A)	1,513	1,558	1,605
	개정안(B)	7,538	7,765	7,998
	차이 (C=B−A)	6,026	6,207	6,393
세수효과 (C×[1−0.2][1])		−4,821	−4,965	−5,115

주: 1) 통합투자세액공제 감면액의 20%가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되는 것을 고려한 값임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(3) 추계결과

❑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에 따라 법인세 등은 2026년 4,821억원, 2028년 5,115억원 등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총 1조 4,901억원(연평균 4,967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1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법인세 등, 2026~2028년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누적	연평균
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(안 제24조 제1항 제2호)[1]	−4,821	−4,965	−5,115	−14,901	−4,967

주: 1) 해당 항목의 세수효과는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(감면액의 20%)를 고려한 값임

Ⅳ. 부대의견

❑ 없음

Ⅴ. 작성자

❑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이정훈	백경엽

❑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정훈	02-6788-4837	nororand@assembly.go.kr